

제324회 임시회
2013. 10. 17(목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정책복지위원회

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3. 10. 17(목)
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최병윤 의원

나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13년 9월 25일

○ 회부일자 : 2013년 10월 1일

다. 상정일자 : 2013년 10월 8일

○ 제3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최병윤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자립장학금을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하고,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장학금 명칭 변경 및 사업대상 확대(안 제3조 및 제10조)
 - 명칭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자립장학금 →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
 - 대상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→ 차상위 계층, 한부모 가족 포함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(안 제5조의2)
 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 규정 신설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최창국)

- 동 조례안은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에게 지원하고 있는 장학금의 지원대상을 현실에 맞게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족 자녀 까지 확대하고, 장학금의 명칭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자립 장학금에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임
-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사업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사업) ①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·고등학교 학생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·고등학교 학생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 및 제5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·고등학교 학생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<u>4. 기초생활보장수급자녀자립장학금 지원사업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제10조(기초생활보장수급자녀자립장학금지원사업) ①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</u></p> <p><u>1. 수급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.고등학교 학생</u></p> <p><u>2. 기타 수급권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.고등학교 학생</u></p>	<p>제3조(기금의 용도).....</p> <p><u>4.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사업</u></p> <p><u>제5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</u> <u>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</u></p> <p><u>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10조(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사업)</u></p> <p><u>①</u> <u>.....</u> <u>.....</u></p> <p><u>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·고등학교 학생</u></p> <p><u>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·고등학교 학생</u></p> <p><u>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 및 제5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·고등학교 학생</u></p>

관 계 법 규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.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"수급자"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.

11. "차상위계층"이란 수급권자(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)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.

□ 한부모가족지원법

제4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"한부모가족"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.

3. "모자가족"이란 모가 세대주{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(世代員)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}인 가족을 말한다.

4. "부자가족"이란 부가 세대주{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}인 가족을 말한다.

제5조(보호대상자의 범위) ①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1호·제1호의 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.

□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

제3조(보호대상자의 범위) 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·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.